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안도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2.

발 의 자 : 안도결 · 정준호 · 임호선
조인철 · 양부남 · 김영환
이재관 · 정진욱 · 박균택
박 정 · 최혁진 · 박홍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4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도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25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제91조의22까지”를 “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7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과세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비과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제4조(비과세) ----- ----- -----.
1. ~ 3의3. (생 략)	1. ~ 3의3. (현행과 같음)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6조의3 · 제86조의4 · 제87조 · 제87조의2 · 제87조의5 · 제88조의2 · 제88조의4 · 제88조의5 · 제91조의14, 제91조의16부터 <u>제91조의22까지</u> 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제91조의22까지</u> 및 제 91조의27----- -----
4의2. ~ 12. (생 략)	4의2. ~ 12. (현행과 같음)